

1. 개정이유

통합물관리가 시행됨에 따라 평가체계의 환경성을 유지하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긴급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합리적 제도개선 추진

2. 주요내용

가. 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조항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긴급공사 등에 대해 협의 절차 개정(안 제15조제3항)

나.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 추가(안 별표 1)

1) 영 별표 3 제15호가목의 재활용시설 중 시멘트소성로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

2) 입법예고 전

3) 규제심사 전

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의 공사는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이전에도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사전공사의 범위 등을 미리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.

별표 1에 제15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란 제15호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바목까지로 한다.

다. 영 별표 3 제15호가목의 재활용시설 중 시멘트소성로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예 외) ① · ②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15조(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예 외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 4호의 공사는 평가서 초안에 대 한 의견수렴 절차 이전에도 안 전점검 결과에 따른 사전공사의 범위 등을 미리 협의기관의 장 에게 통보하고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.</u>

[별지]

[별표 1]

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및 기간

(제19조제1항 관련)

대상사업		조사기간
1. ~ 14. (생략)	(생략)	(생략)
15. 폐기물처리 시설·분뇨처 리시설 및 가 축분뇨처리시 설의 설치사 업	가. ~ 나. (생략) 다. 영 별표 3 제15호가목의 재활용시설 중 시멘트 소성로	(생략)
	라. 기존 다목을 라목으로 이동 마. 기존 라목을 마목으로 이동 바. 기존 마목을 바목으로 이동	(생략)
16. ~ 17. (생략)	(생략)	(생략)

비고

1. ~ 4. (생략)